



판례로 본

## 회사 폐업시 임금채권의 확보 방법

정태상

변호사

### 1. 부도난 회사의 운영

회사의 부도란 원래 회사가 발생한 어음이나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대개 부도를 계기로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파산절차, 제3자 인수 파이어이 이루어진다.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정리절차, 화의절차, 제3자 인수가 이뤄지며, 이 경우 사실상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등에 의하여 임금채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문제는 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도주하고(사업주가 도주하는 이유는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고 채권자들의 면제독촉을 일시

나마 모면하기 위한 것인데 부도난 회사의 사업주는 대개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른다.

회사가 이러한 상태가 되어 채권자나 채무자 등의 신청으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법원의 주도로 회사 재산을 환가하여(경매등으로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임금채권(임금채권이란 매월 지급되는 급여나 또는 1년 중 수회에 나누어 지급되는 상여금을 의미하지만 이하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에 대해서는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일반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 배당된다. 다만 보통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개는 채권자들이 직접 경매 등으로 임의로 채권을 실행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임의로 채권자들이 채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 2.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

### 가. 대책위원회의 구성

회사의 근로자 개인별로 임금채권을 확보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단시간 안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만,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시급히 대책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야 한다. 대책위원회에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우선 구성에 동의하는 근로자들부터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하여야 하고 또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예전대 고용승계나 계열사로의 전직이 보장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따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좋을 것이다.

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가능한 한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회

사의 관리자나 경리담당 부서 직원 등 회사의 재산상태나 부채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먼저 대표자를 선정하고(대표자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3,4명이 적당하고 1명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회사로부터 확보한 임금에 대한 분배원칙을 세워야 한다. 보통 대책위원회에서 확보한 임금의 분배방식은 대책위원회 대표들의 활동비 지급,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 퇴직금의 순서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대책위원회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주도하여 회사 재산의 파악, 노동부에의 고발, 변호사 선임, 회사재산의 양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 나. 회사 재산의 파악

아무리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이 있어야 그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또는 부도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회사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의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의 3 가지 종류로 나누어 파악하여야 한다. 회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 등 회사재산 보전절차의 진행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사업주의 개인재산

에서도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개인재산도 파악하여야 하지만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재산에서는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 예컨대 실제로는 회사의 사업에 사용된 건물이라도 건물소유자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종종 있다. 회사 재산의 소유자를 파악하려면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소유자를 확인하면 되고, 동산의 경우 회사에 있는 동산은 일단 회사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회사 내에 있는 동산은 모두 회사 재산으로 보면 된다. 회사의 재산 중 부동산과 동산은 그 조사가 어렵지 않지만 회사의 채권은 회사의 관리자나 경리부서 직원을 통하여 파악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채권의 종류로는 가장 혼란 것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물품대금채권등이 있는데 채권을 파악할 때는 반드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일, 채권의 발생원인(보증금인지 물품대금인지 등)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조사하여야 한다.

### 3. 임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방안

#### 가. 채권과 동산의 양수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라면 회사의 재산 중 채권과 동산은 환가하기가 쉬우므로 가압류를 하지 않고 양도를 받아 처분하여 임금채권으로 충당하는 것이 빠르기

도 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다. 동산을 양수 받으려면 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은 후 동산을 회사 내에 두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동산이 회사 내에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그 동산을 압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근로자들이 이미 양수받은 동산을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나 가압류하더라도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찾아올 수 있으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돈이 소요되므로 동산을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처분하여야 한다.

채권을 양수받기 위해서는 물론 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으로 양도양수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사업주(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자에게 “어떠한 채권을 누구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할 때에는 동시에 배달증명으로 배달하여야 한다. 배달증명으로 하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회사의 채무자)가 배달받지 못하였다고 할 때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도 근로자 대표가 양수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을 양수받으려면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환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IMF 관리체제 이후 폐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일방적인 고용조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

#### 나. 회사 재산의 가압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는 회사의 재산을 숨기거나 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 관계가 긴밀한 채권자에게 회사의 재산을 양도할 우려가 있다. 회사의 재산을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버리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과악된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먼저 가압류등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회사의 재산 중 동산(자재, 시설등)은 채권자들이 사업주의 승낙 하에 회사 내에서 반출해갈 우려가 있으므로 가압류권이라도 반출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하고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자들이 먼저 양수를 받거나 사업주가 양도해 주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 다. 노동부에의 고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은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노동부에서 1차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노동부에 고발하여야 한다. 사업주를 고발하는 이유는 반드시 사업주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고발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고발 이후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임금 확인서는 소송제기를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근로자들이 회사 재산을 가압류할 때 노동부에서 무공탁협조의뢰서를 받아 첨부하면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 라. 소송의 제기 또는 공정증서의 작성

회사로부터 동산과 채권 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임금채권을 모두 충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미지급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기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협조해준다면 공정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해준다면 그 공정증서는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회사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 마.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집행

확정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그 다음 절차는 위 확정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회사의 재산을 집행하여 임금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배당신청을 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근로자들이 주도적으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집행절차에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정태상 변호사**

전화 : 525-3660 팩스 : 525-3663